#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호 8867

제안연월일: 2025. 3.

제 안 자: 보건복지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건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006	백종헌의원	2024. 8. 20.	2024. 11. 14.
	7374	어기구의원	2025. 1. 9.	소위 직회부

-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 심사제1소위원회(2025. 2. 19.)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 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다.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5. 2. 21.)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 방식과 보험료부과점수의 명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보험료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관련 규정을 「국민건 강보험법」의 변경 내용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 3. 대안의 주요내용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를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내용에 맞춰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또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수정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 법률 제 호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전단 중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같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부과표준소득의 산정에 관한 특례)"를 "(농어업인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인의 재산에 적용할 보험료부과점수"를 "농어업인의 재산에 달리 적용할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27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 제27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 른 보험료 지원) ① 국가는 농 른 보험료 지원) ① -----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_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 -----같은 법 제71조제2 는 보험료를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같은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 법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 부과점수----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 제 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감되 는 금액을 합친 금액은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 내여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부과표준소득의 산정에 제28조(농어업인의 재산보험료부 관한 특례) ① 국민건강보험공 과점수 산정에 관한 특례) ① 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농 어업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 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 -----제72조에 따른 재 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산보험료부과점수----같은 법 제72조제1항에도 불구 하고 휴경 • 폐경지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농어	업인의	재
산에 대	해서는	다른	재산과	달
리 적용	할 수 있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u>농어업인의</u>

<u>재산에 적용할 보험료부과점수</u>
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② <u>농어업인의 재</u>
산에 달리 적용할 재산보험료
<u>부과점수</u>
<u>.</u>